

[별첨 2]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별표 7의3

구 분	자 격 기 준
검사인력	1.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제1항제1호부터 제9호

구 분	자 격 기 준
자체점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승강기 기사</u>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승강기 산업기사</u>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 <u>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u> "이라 한다)이 <u>2개월 이상</u> 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승강기 기능사</u>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u>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u> 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u>산업기사 이상의 자격</u> 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u>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u> 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u>기능사 자격</u> 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u>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u> 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u>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u>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 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u>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u> 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u>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u>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 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u>실무경력이 1년 이상</u> 인 사람
	8.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u>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u>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u> 인 사람
	9. 승강기의 <u>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u> 인 사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해석 관련[승강기안전과-1371(2018.5.23.)]>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 또는 승강기 자격증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